약관 개정 대비표

■ 약관명: 「기부금 서비스」이용약관
■ 변경 시행일: 2026년 12월 9일 (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 주요 변경 내용: 기부처 확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조 (목적) 기부금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이 종교기관, <신설>(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에게 제공하는 기부금서비스 (이하 “기부금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의 기부금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기부금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이 종교기관, 학교(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에게 제공하는 기부금서비스 (이하 “기부금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의 기부금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부처 확대
제2조 <생략>	**제2조** <좌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부금 서비스”란 "이용자”가 "은행"의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종교기관, <신설>을 말합니다. 3. "납부자"란 기부이체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명의계좌에서 “이용자”인 종교기관, <신설>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4. “기부이체 서비스”란 납부자가 납부자 명의의 계좌에서 종교기관, <신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부금 서비스”란 "이용자”가 "은행"의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종교기관, 학교를 말합니다. 3. "납부자"란 기부이체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명의계좌에서 “이용자”인 종교기관, 학교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4. “기부이체 서비스”란 납부자가 납부자 명의의 계좌에서 종교기관, 학	기부처 확대

설>으로 기부금을 이체하는 서비스이다. 5. "수신계좌"란 기부금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합니다. 6. "기부금"이란 납부자가 이용자에게 보내려는 자금을 말합니다 **제4조~제12조** <생략> 부 칙 <생략> <신설>	교로 기부금을 이체하는 서비스이다. 5. "수신계좌"란 기부금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합니다. 6. "기부금"이란 납부자가 이용자에게 보내려는 자금을 말합니다 **제4조~제12조** <좌동> 부 칙 <좌동> 이 약관은 2026년 12월 9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부칙추가